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 공청회 운영 현황 분석

조공장 | 주용준

■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진 주용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이문형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

최준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박광국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우편번호) 30147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15년 11월 20일

발 행 2015년 11월 24일

등 록 제17-254호(1998년 1월 30일)

ISBN 978-89-8464-946-0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조공장, 주용준. 2015.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공청회 운영현황 분석」.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값 5,000원

서 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지 벌써 3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제도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전문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한 평가서 검토, 환경영향평가사제도 도입 등 많은 제도적 발전은 많은 외국의 연구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영향평가제도, 주민참여제도, 갈등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연구해야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경갈등 문제는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제도내에서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참여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좋은 성과를 담았습니다. 후속과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제도가 더욱 효율적이고 갈등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조공장 박사와 주용준 박사, 그리고 자문을 해주신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이문형 회장과 우리 원의 최준규 박사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5년 1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박 광 국

국문 요약

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의 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분석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주민참여부분, 설명회부분, 공청회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공청회부분에서는 일본 가와사키 시의 공청회 관련 조례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운영현황의 분석으로는 이미 실시된 설명회와 공청회의 녹취록과 평가서를 분석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설명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가 답변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설명회의 내용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설명회 운영 관련 개선방향으로는 설명회에 사업자 내부의 책임 있는 자가 답변에 나설 것, 환경영향평가 해설사 또는 환경영향평가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공청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공청회를 사업자가 주관하니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결국 사업자의 판단대로 처리된다는 점, 공청회 진행이 쌍방향적인 토의보다는 각각의 진술과 답변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사업자가 아닌 협의기관(또는 승인기관)이 사업자와 주민 등의 견해 차이를 듣는 자리로서 자리매김할 것(즉 협의기관이 또는 승인기관이 주관할 것), 그리고 공청회 진행을 사업자와 주민의 토의를 반복하여 논점을 명확히 하는 운영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주민참여 절차 생략에 대한 이슈가 제시되었다. 절차생략과 관련한 운영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주민의 반대 등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도록 한 13조 관련사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25조 관련 사항이 타당한지 여부가 지적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먼저 13조와 관련하여서는 설명회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에 화상회의를 개최하거나 승인기관 주최의 의견수렴회를 개최하는 등의 대체수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25조와 관련하여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로서 설명회 및 공청회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후속 과제로서 상세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설명회, 공청회

차 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구성	2
제2장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참여 규정	3
1. 주민참여 관련 규정	3
2. 설명회 관련 규정	8
3. 공청회 관련 규정	10
제3장 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 사례	18
1. 설명회·공청회 운영 사례	18
2.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33
제4장 결 론	44
참고문헌	47
Abstract	49

표 차례

〈표 3-1〉 00비축기지 주민의견 및 조치사항	20
〈표 3-2〉 00국가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개발사업 주민의견 및 조치사항	25
〈표 3-3〉 00댐 건설사업 주민의견과 조치사항	27
〈표 3-4〉 00항 항로 준설사업 주민의견과 조치사항	30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평가서의 공고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공청회 개최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참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큰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운영상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비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립(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 및 공청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음
-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설명회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많은 경우에 환경적인 문제 이외의 사안(설명회 운영상의 문제나 보상 등의 문제)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음
- 주민의 요구사항이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경우도 많음

이러한 배경에서 주민참여 절차가 형식적이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주민과 사업자 양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효율적인 주민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설명회, 공청회도 본래의 취지에 맞는 운영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참여형 기술영향평가 기법 등 주민참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 개발도 필요하다. 사업자, 협의기관, 승인기관,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매뉴얼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주민참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의 설명회 공청회 관련 규정과 실제 설명회 및 공청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상세한 개선방안 (법령개정안 및 운영매뉴얼 등)은 후속 연구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모아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정리하였고, 둘째, 설명회 공청회의 운영현황을 알 수 있는 녹취록 또는 녹화 기록물이 있는 사업을 골라서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평가대행자,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설명회와 공청회에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 등을 서술하고, 제2장에서는 제도상의 규정과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참여 규정

1. 주민참여 관련 규정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¹⁾

첫째, 환경영향평가 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해야 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해한다. 다섯째,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특히 셋째와 넷째 항목에서 주민참여가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주민참여 시기 및 의견수렴 주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이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²⁾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 수렴 주체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2)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1항

장이며,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주체는 사업자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평가서 작성주체가 의견수렴의 주체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 단, 실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인지 아니면 사업자인지에 대한 논의는 본 장에서는 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다.

다. 의견 수렴 방법

1) 의견 수렴 종류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³⁾

즉, 우리나라에서 의견 수렴의 종류는 공고 공람, 설명회개최, 공청회 개최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에서 평가서 초안의 공공 공람, 설명회 개최는 의무사항이며, 공청회 개최는 주민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실시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2)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모두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 환경영향평가는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 공휴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⁴⁾

3)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1항 및 제25조

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6조 1항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공고 및 공람을 시행할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정보통신망에는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는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게시하여야 한다.⁵⁾

환경영향평가에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⁶⁾

3) 주민 등의 의견 제출 방법

주민 등은 초안의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초안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의견은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하여 기술할 수 있다.⁷⁾ 이 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동일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⁸⁾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 의견을 통보받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⁹⁾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2항

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3항

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 1항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 3항

라. 의견수렴 반영 여부 공개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것도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규정이다.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¹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모두 동일하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관련 시·군·구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¹¹⁾ 한편 반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평가서 작성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마.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 수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면,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 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¹²⁾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을 의미한다.¹³⁾

10)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4항 및 제25조 3항

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제 43조

12)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2항

13)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바.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1) 개별법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법 14조에서는 개별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⁴⁾

이는 개별법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의 주민참여 절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법 25조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⁵⁾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제한조건을 두었다.

14)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15)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4항

2. 설명회 관련 규정

가. 설명회 운영 주체

1)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운영주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¹⁶⁾

2)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운영주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설명회의 개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제도적으로 되어있지만, 환경영향평가의 설명회의 개최 주체는 사업자이다.

나. 설명회 개최

1) 개최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초안 공람기간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¹⁷⁾ 초안 공람기간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40일, 환경영향평가는 20~60일이다 (공휴일은 제외).

2) 개최장소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 작성자가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¹⁸⁾

16)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1항

1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1항 및 제39조 1항

3) 개최공고

평가서 작성자가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¹⁹⁾

다. 설명회 생략

1) 설명회 공청회 무산 시

주민반발 등의 사항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 제도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법 제13조 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²⁰⁾

이에 대하여,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에 더더욱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는 주민이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만일 불가피하게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2항 및 제39조 2항

1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3항 및 제39조 3항

20)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3항 및 제38조 1항

먼저 설명회나 공청회가 생략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2가지 경우이다.²¹⁾

첫 번째는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이다.

또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평가서 작성자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각호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²²⁾

첫째,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둘째,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청회 관련 규정

가. 공청회 개최 요건

1) 공청회 운영주체

공청회의 운영주체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²³⁾

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 1항

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 2항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1항 및 제40조 1항

2) 공청회 개최요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이거나, 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이면 개최하여야 한다.²⁴⁾

나. 공청회 개최 시기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²⁵⁾ 즉, 공청회의 개최시기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이 끝난 이후라는 것이다.

다. 공청회 개최 공고 및 결과 통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이나 계획의 개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²⁶⁾

평가서 작성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²⁷⁾ 그런데 통지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라. 공청회 주재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공청회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1항 및 제40조 1항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2항 및 40조 2항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3항 및 40조 3항

2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4항 및 40조 4항

중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²⁸⁾ 이는 사업자가 주재자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어느 한쪽의 의견을 편향됨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의 주재자는 사업자가 주관 시장 및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²⁹⁾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정성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제로 수립하는 주체가 사업자라는 점에서, 사업자와 행정기관이 서로 협의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마. 공청회의 의견진술자

1) 의견진술자의 선정

공청회는 설명회와 달리 주민이 아닌 전문가를 의견진술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³⁰⁾라고 되어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비해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이 공청회 예정일 7일 전까지 주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주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청회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³¹⁾ 사업자가 아닌 주관 행정기관이 정함으로써 나름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점이 보인다.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2항 및 제10조 2항

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

사업 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의견진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진술하려는 환경보전방안 등 의견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 참가자 선정의 공정성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³²⁾ 라고 되어 있다. 주재자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명확하나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 공정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바. 공청회 진행

1) 주재자의 역할

주재자의 역할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모두 동일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행규칙 제5조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³³⁾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 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³⁴⁾

2) 의견진술의 범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자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³⁵⁾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³⁶⁾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공청회의 의견진술 범위는 명확히 다르다는 점이다.

3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4항 및 제10조 4항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및 제11조 1항

3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 3항 및 제11조 3항

3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 2항

3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 2항

3)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모두 공청회 개최결과를 시행규칙 별제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³⁷⁾ 별지3의 서식에는 의견진술자와 사업자의 각각의 의견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3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업 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공청회 주재자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인원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의견진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
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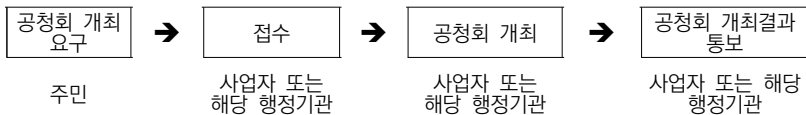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사. 공청회의 생략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³⁸⁾ 다만,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공청회가 생략된 경우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3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3장 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 사례

본 장에서는 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사례³⁹⁾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명회 및 공청회의 녹취록을 분석하고 평가대행자, 환경단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상의 이슈를 도출하였다.

1. 설명회·공청회 운영 사례

가.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조성 사례

1) 사업의 개요

- 위치: 울산광역시 OO군 일원
- 사업의 종류: 산업단지의 조성(에너지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한국OO공사
- 승인기관: 울산광역시
- 사업기간: 2014~2020년
- 사업의 내용: 지하비축기지(989,678㎡)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2015년 4월 14일(취소)
- 환경영향평가 추가 주민설명회 개최: 2015년 6월 3일

2) 주민의견 및 사업자의 대응

OO비축기지 지하화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OO비축기지 지하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사업지구 주변 주민의 반대로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됨)로 「환경영향평가법」

39) 운영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에 무기명으로 표기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게 되었다.

추가 주민설명회는 13인이 참석하였으며 추가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은 다음과 같다.

- 2005년 비축기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향후 추가 확장개발은 없을 것으로 하였지만 확장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음
-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인접하여 있는 학교의 학생 안전, 스트레스, 수업 지장에 대한 고려가 없음
- 타 지역에서 비축기지 1km 이내에 3, 4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사업 지구밖에 없으며 00 석유화학복합시설이 인접하여 들어서면서 불안감이 가중됨
- 지하수압을 이용한 저장시설이지만 지하수 고갈문제 및 지하수위 조절 문제 발생 시 유류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대책 부재

1차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무산되고 추가 주민설명회에도 13인이 참여하는 등 저조하였지만 해당 지역주민은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개발에 따른 면밀한 검토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주민의견서의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 개발사업에 따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긍정적인 경제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운영 시 근접해 있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국가공공시설 보안유지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제한으로 마을단위에서 재산적,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지하비축기지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안정성, 이주경향, 부동산 가치의 하락 등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체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공사 및 운영 시 지하수오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자료가 부족하여 영향 여부를 신뢰할 수 없음
- 암반지역에 대한 발파공사시 주변의 생산시설과 축사, 철탑, 학교 등에 대한 구조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 여부의 검토 필요

주민의견제출서와 추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자는 지하수 오염과 항내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등 환경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와 저감방안을 약속했지만, 그 외의 주민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기되는 환경 외적인 주민 불편 및 갈등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표 3-1〉 00비축기지 주민의견 및 조치사항

주민 주요 의견	반영 및 조치사항
◦ 2005년 울산추가비축기지(650만 배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향후 온산에 추가 비축기지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사업 추진으로 석유공사를 신뢰할 수 없음	◦ 현행 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1,280만 배럴 규모 지상탱크를 철거하고 1,030만 배럴을 친환경적인 지하기지로 건설하는 대체 사업으로 “추가”나 “증설”이 아님
◦ 과거 석유비축기지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변에 고도를 제한(현재는 해제)하여 주민은 위축, 불안 상태인데 지하비축기지 건설은 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임	◦ 금회 공사는 지상탱크를 지하저장 시설로 대체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회 공사로 인한 추가되는 행위제한은 별도로 없음
◦ 비축시설과 주변 기존시설과의 현행 이격거리로는 안심할 수 없음 - 2006년도 발파공사 시 묘지가 붕괴되고, 거주민이 느끼는 신체적 불편함이 있었음	◦ 진동 및 소음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게 설계에 반영하였음 ◦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민감함은 개인별 차이가 있으나 향후 건설공사 시 피해가 최소화되게 관리예정임
◦ 평가서상에는 법적허용치 내에 공사한다고 했지만 가장 민감한 시설인 학교와 지나치게 인접하여 있는데 인근학교(온산중, 온산고) 학생 안전, 스트레스, 수업 지장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음	◦ 학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학교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은 0.3kine 이지만 실제공사는 이보다 영향이 적을 것임
◦ 평가서 초안에 천재지변(지진)에 대한 평가나 대책이 부재함	◦ 지하비축기지 경우 7.0 규모의 지진에도 안전하며 이는 원자력발전소에 준하는 안전수준임
◦ 원유 입하 시 가스압 상승에 대한 조절기능 문제시 폭발 위험에 대한 대책	◦ 입하 시 압력상승은 매우 미미하고, 원유 비축 시 동굴 내 공간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고 있어 폭발조건을 미연에 차단함 ◦ 내부 구조물의 경우 폭발압력을 고려하여 건설하므로 폭발위험이 없도록 설계 중임

〈표 3-1〉 00비축기지 주민의견 및 조치사항(계속)

주민 주요 의견	반영 및 조치사항
지하수압 이용한 저장 시설인데 지하수 고갈문제 및 지하수위 조절 문제 발생 시 유류유출로 지하수 오염 대책 부재	지하비축기지 원리상 유류유출은 발생할 수 없으며, 지하수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공동 상부에 수평수벽시스템, 하부에 수직수벽공을 계획하였으며, 터널굴착 시 발파로 인한 암반수를 막기 위해 그라우팅 공법을 계획하였음
지하수법상 지하비축기지로 인해 오염발생 및 수질악화지역으로 규정되어 주변지역이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하수 개발 제한으로 주민 지하수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데 대책은?	지하수법은 주변 지하수 이용은 모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영향분석을 실시한 후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는 법적 보호장치이며, 기지 운영상 문제가 없는 지하수 개발은 최대한 협조할 예정임
상기와 같이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지진 폭발 지하수 등) 평가서에 대책이 없음	추후 보완하여 본안에 제시하였음

3) 특이사항

마을 주민은 2005년 비축기지 건설로 인하여 환경적 경제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마을주민이 의견을 종합하여 주민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관심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환경적 사회적 의문사항을 직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반대하였다.

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참석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에서 주민의견과 상관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대한 불신도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과거 개발 사례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규제(현재에는 해제되었음)에 대한 피해의식과 이로 인한 갈등이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불신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고 여겨진다.

사업자는 주민의견제출서에 대한 답변에서 마을주민의 이러한 불신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보다는 과거와 현재의 사업의 연계를 차단하고 상호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등 갈등 해소 차원에서의 접근은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의 불신과 피해의식을 고려할 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대한 반대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예상가능한 것이지만, 이러한 원인 분석과 해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단순히 주민의 반대로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설명회의 무산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 중앙선(00-00)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1) 사업의 개요

- 위치: 충청북도 00군-경상북도 00시
- 사업의 종류: 복선전철 계획
-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
- 승인기관: 국토해양부
- 사업기간: 2014~2020년
- 사업의 내용: 연장=148km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 관련 지자체별로 2014년 09월 17일과 18일에 4군데에서 개최

2) 주민의견 및 사업자의 대응

4개 시·군에서의 주민설명회의 의견을 크게 분류하면 철도 노선 계획과 편입용지·농지에 대한 보상 문제, 소음·경관 등의 환경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철도 노선 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지번 등)과 정류장이 설치되는 위치, 복선과 단선 구간의 경유지 등이 있다. 편입용지와 농지 보상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노선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구체적인 지역과 농경지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인해 공사 시 농사를 못 짓게 될 경우의 피해 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잔여지에 대한 처리 대책, 주거지 전면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지가 하락에 대한 대책 등이 제기되었다.

환경적 문제는 주거지와 인접하여 철도가 자리 잡으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방음벽 설치에 따른 경관 영향, 철도 노선의 성토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교량 요구사항 등이 제기 되었다.

사업자는 주민의 편입용지와 농지 분할, 농사 방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현재까지 노선이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도 소음 영향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구간과 교량 설치 요구에 대한 불가능한 사유, 이동로 단절에 따른 통로박스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철도와 인접한 주거지에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주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공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특이사항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특별한 갈등 없이 진행되었으며, 주민의 개별적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민에게 설명하는 등 사업에 따른 의문사항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나 철도는 계획 추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노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은 철도 개발 및 경유하는 노선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과정인 실시설계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개발과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설명하기보다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음 등에 대한 환경기준의 만족 여부를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기보다는 발생 소음도에 따른 인간이 느끼는 영향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에너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사례

1) 사업의 개요

-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 사업의 종류: 에너지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OO에너지
- 승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기간: 2013~2017년
- 사업의 내용
 - 총 용량: 221.0MW(기존 122.9MW + 금회증설 99MW)
 - 열원시설 부지면적: 99,1009㎡(기존: 42,264.7㎡, 금회 증설: 56,832.2㎡)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 두 군데의 지자체에서 2013년 10월 25일에 개최

2) 주민의견 및 사업자의 대응

주민설명회는 군산시에서는 25명, 서천군에서는 13명이 참석하였으나 서천군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개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환경적 측면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정리하면 주민설명회를 운영할 때, 환경영향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수치 등을 사용하는 것과, 주민설명회의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에너지 발생원을 무연탄보다는 청정한 LNG의 사용과 연돌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여부, 냉각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개 발생,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연료운송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대한 영향과 대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추가인력 충원 시 지역주민의 채용과 운영 시 주민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다.

사업자는 사업추진에 대해 주변 마을에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번

사업에 지역주민이 협력하면, 추가적으로 다른 개발사업의 유치가 용이하고, 반대하면,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개발사업 또한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는 주민설명회 개최의 근본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개인과 논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 00국가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개발사업 주민의견 및 조치사항

주민 주요 의견	반영 및 조치사항
◦ 군산에 유연탄부두 조성으로 유연탄 공급이 원활한 환경조성으로 유연탄관련 산업들이 집적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입주를 반대하며, 발전소 운영 시 발생하는 PM10에 의해 자동차산업 등의 도장공정이 있는 사업이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 운영 시 최대 연료사용량으로 모델링을 수행하여 예측값을 제시하였음
◦ 운영 시 발생하는 수증기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시민 생활피해가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피해대책 제시하도록 할 것	◦ 냉각탑 가동으로 인한 인근지역에 미치는 미기상 변화(안개, 무빙, 습도)를 예측하여 제시하였음
◦ 분진 피해 방지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것	◦ 비산배출원에 대한 밀폐화, 옥내화하였음
◦ 연료로 유연탄과 LNG가 있는데 유연탄으로 결정한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라면 연료 변경을 검토해주기 바람	◦ 대안별 연료검토 자료를 제시하였음
◦ 회사 내부 감시체계 외에 시민이 중심이 되는 외부 감시체계(독립급여 감시원)를 도입하도록 요구	◦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TMS 설치대상임

3) 특이사항

주민설명회의 운영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속한 개인이 장시간 동안 질문을 하면서 사업자와의 논쟁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발언권이 제한되면서

주민 간 주민설명회의 운영에 대하여 논쟁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다. 주민설명회 개최 주체는 한 개인과 장시간 논쟁하기보다는 주민설명회 취지에 부합하게 다양한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심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번 주민설명회에서와 같이 에너지 발생원을 무연탄에서 LNG로 대체하는 대안에 대한 문제나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와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어 주민 갈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협의기관이나 승인기관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 00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 사업의 개요

- 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 사업의 종류: 수자원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봉화군
- 승인기관: 경상북도
- 사업의 내용
 - 댐형식: 필댐
 - 댐제원: 높이 43m, 길이 267m
 - 면적: 저수면적 0.28km², 유역면적 27.8km²
 - 총저수량: 4.36백만m³
 - 도로: 진입도로 866m, 이설도로 1,884m, 농가연결로 1,571m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2015년 5월 19일

2) 주민의견 및 사업자의 대응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은 계획적 측면에서 기존에 주변에 특별대책지역 지정 후 복구공사와의 댐 건설의 중복 개발 여부와 현재의 입지로 결정된 과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댐 개발에 관한 자료에 대한 지역 주민에의 배포 여부, 조사·측량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한 사전 공지, 사업 추진 이전에 개발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댐 하류 편입지역과 댐 설치 후 농작물 피해, 이주단지 건설 등이 있었다.

사업자는 주민이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 댐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을 약속하고, 댐의 입지 선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농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과 여부를 분석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표 3-3〉 00댐 건설사업 주민의견과 조치사항

주민 주요 의견	답변 및 조치
◦ 해당지역 주민 대상, 사업관련 자료의 배포 계획은 없는지 ◦ 조사·측량 등 시행 시 해당지역 주민에게 최소한의 안내 및 공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사업관련 자료는 공람 중에 있으며, 조사 등 시행 시 이장님, 면장님 등을 통해 사전 전달토록 하겠음
◦ '08년 특별대책지역 지정 후 485억 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홍수조절용 댐을 신규 건설한다고 하니 중복투자로 판단됨	◦ 복구공사는 50년 홍수빈도 기준이라 근본대책은 아니며, 금회 사업목적은 홍수조절+용수공급이므로 중복사업이라 볼 수 없음
◦ 당초 댐 위치가 서벽에 계획되었다가 주민이 반대해서 애당리 쪽으로 위치가 옮겨졌는지 ◦ 금년 1월1일 이후 애당리 지역 일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 기존 월로방저수지 계획된 바 있었으나, 환경부 의견에 따라 봉화댐으로 통합하여 추진 중임 ◦ 보호구역 사항은 봉화군 도시환경과 문의 후 답변하겠으며, 본 사업과는 무관
◦ 예전 수해 시 운곡천 하천확장공사가 대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댐 하류부 수진부락 인근은 홍수저감 공사시행이 제외되었음. 댐 건설의 조속한 시행 및 월노천 하류부의 하천확장 전시행이 필요함	◦ 기존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하도 확장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해 신규댐을 설치하는 사항임
◦ 주민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하나, 대부분 주민이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알지 못함. 사업추진 이전에 주민 동의 얻는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	◦ 댐 사전검토협의회(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음. 지속적으로 의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음

〈표 3-3〉 00댐 건설사업 주민의견과 조치사항(계속)

주민 주요 의견	답변 및 조치
◦ 댐 설치 시 하류 어느 범위까지 수용이 이루어지는지	◦ 댐 하류부 방류구조물, 훼손지 공원 조성 등에 의해 하류부 일부 편입 예상됨. 구체적 사항은 추후 확정
◦ 댐 설치 후 과수농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책은?	◦ 댐 규모가 작아, 안개 등 기상변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물야저수지 설치 이후 우박 이동경로가 바뀌고, 영주댐 건설 등과 연계되어 추가피해가 우려되는데, 농작물 피해 등 피해대책 수립 하여야 함	◦ 댐 건설 후 5년 간 기상, 농작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임. 이를 바탕으로 피해발생 시 대책을 수립하겠음
◦ 수물지역 내 이주민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을 요청함	◦ 10세대 이상 주민 동의 시 인근에 이주단지 조성을 검토하겠음. 영주댐의 경우, 이주단지 3개소 조성한 사례 있음
◦ 상수원 활용 계획 시 댐 주변 및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제약사항이 발생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최근 신규댐 건설 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 하고 있지 않는 추세로, 주민 자발적인 수질보전 노력 필요함 ◦ 댐 주변 공원친수시설 조성 등을 통해 주변 지역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 백두대간수목원 용수공급 시 하류지역에 오수방류에 따른 환경영향은 없는지?	◦ 해당사항은 본 사업과는 관련 없으며, 수목원 용수는 수목원내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적정 방류할 것으로 판단됨 ◦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음
◦ 댐 우안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자연림보다는 조림지가 대부분이므로, 환경청 협의 등을 통해 보전 지역 해제 또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협의 바람	◦ 보전지역 일부 편입가능하도록 대구환경청 협의하겠음

3) 특이사항

00댐 건설사업은 주민설명회 이전에 댐 사전검토협의회(지역협의회)를 통해 댐의 개발과 입지에 대해 논의한 상태여서 주민과 사업자 간에 특별한 논쟁이나 갈등 없이 질문과 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사업자가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명시한 것은 선언적이라도 주민과 사업자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 00항 제2항로 확장 준설 환경영향평가서

1) 사업의 개요

-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 사업의 종류: 항만의 건설(준설 사업)
- 사업시행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승인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기간: 5개월
- 사업의 내용
 - 준설면적: 93,900㎡
 - 준설량: 316,532㎥
 - 준설심도: DL(-) 11.0m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2015년 1월 7일

2) 주민의견 및 사업자의 대응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7명(참석자 명단 작성기준)이었으며 제기된 주요 의견은 대부분 준설보다는 준설토 투기에 관한 것으로, 중금속 항목이 초과하는 수저준설토에 대한 활용 여부와 그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 준설토 투기지역 지역의 수용 용량의 적정성, 오탁방지막의 실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사업자는 주민 의견에 대해 투기장 선정과 과정과 수저준설토에 대한 법적인 기준 검토, 부유사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과 모니터링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필요 시 관련 단체에 부유사 발생 및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약속하였다.

〈표 3-4〉 00항 항로 준설사업 주민의견과 조치사항

주민 주요 의견	답변 및 조치
◦ 준설구역은 중금속이 문제되는 지역인데 준설토를 처리 없이 마산해양신도시로 바로 투기하는지?	◦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의 준설토 반입이 어려운 것으로 창원시와 협의되어 가포 B지구 부지로 투기장을 변경하였으며, 준설토투기장 운영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은 준설토투기장 조성계획 시 수립할 계획임
◦ 마산해양신도시 수토여유용량 근거	◦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의 준설토 반입이 어려운 것으로 창원시와 협의되어 가포 B지구 부지로 투기장을 변경하였으며, 가포 B지구 부지의 수토가능량은 126만㎥로 사업구역 준설량 316,352㎥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일부 정점에서 일부 중금속 항목이 수저준설토 활용기준을 초과하는데 수저준설토 활용기준을 초과하는 준설토를 투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준설토투기장 운영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은 준설토투기장 조성계획 시 수립할 계획임 호안시설을 설치하여 해역과 차단할 경우 수저 준설토유효활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준설토의 투기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오탉방지막만으로 어시장 및 수협 전면에 부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 사업구역 인근 마산구항 방재언덕은 부유사 발생이 큰 그랩준설을 적용하였으나 특별한 문제 없이 기초 굴착을 시행하였음 ◦ 본 사업은 부유사 발생이 적은 펌프 준설을 채택하여 부유사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필요 시 관련 단체에게 설명을 실시하겠음
◦ 준설 시기는 언제인지?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진행할 계획임

바. OO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 공청회의 개요

- 위치: 경기도 하남시
- 사업의 종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OO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
- 공청회 주재자: OO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개최일시: 2013년 7월 18일(목)
- 개최장소: OO 국민체육센터
- 참석인원: 약 500여 명
- 의견진술자: 000 집행위원장, OO 교육공동체 대표, OO 지구 연합회 총무, 000 자치위원장, 입주예정자 2인
- 사업자 측 답변자: 사업자 부장 2인, 팀장1인, 평가대행회사 상무 1인, OO대학교 교수

2) 의견진술내용 및 사업자 측 답변

의견진술내용	답변 및 조치
◦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고 충분한 답변이 있었음. 하루 빨리 입주예정자들을 위해서라도 조기착공하여 주기 바람	-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왜 기존 풍산동에서 강동구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했는지	◦ 부지이전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와 LH가 이해하는 부분으로 사업자가 답변하기엔 한계가 있음 ◦ 환경관련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실시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픈 옥외 전광판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부지배치계획을 보면 주요 시설들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냉각탑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며, 땀뽕의 경우 운영 시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 공사 시에는 항타가 아닌 매입공법으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운영 시 주요 소음유발 시설은 건축물 내에 배치할 예정

의견진술내용	답변 및 조치
평가서상 온실가스 발생량이 89만 6,404 톤이 발생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 LNG연료사용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저감방안임	이산화탄소는 개인사업자들이 저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내용으로 평가작성 시 실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음
환경저감의 가장기본적인 부분이 용량축소이며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열공급 위주로 용량을 축소하여 주고 시설을 지하화하여 주기 바람	지하화할 경우 2017년 하반기에나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지 또한 1.5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함. 지하화한다고 해도 주요 시설 굴뚝과 냉각탑은 지상에 위치하게 됨

3) 특이사항

주재자는 공청회의 목적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평가서 본안을 잘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입지변경이나 발전용량에 대해서 사업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승인기관과 중앙정부의 협의로 입지가 변경되었다면 공청회 답변자는 사업자만이 아니라 승인기관이나 중앙정부 관계자도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 측 답변자도 부장급이므로 사업계획의 대안검토, 입지검토 등의 계획변경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답변할 수 없으며, 사업자 측 입장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 의견진술자의 의견이 타당하더라도 사업자 측의 입장을 변경하여 의견진술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의견진술자와 사업자의 의견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설명회든 공청회든 답변은 사업변경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책임자가 전면에서 나서야 할 것이며, 특히 공청회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의 담당자가 나와서 의견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

가. 설명회 및 공청회의 운영주체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법령에서는 설명회와 공청회의 목적이나 개념의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설명회도 공청회도 평가서 작성 주체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설명회는 의무사항이지만 공청회는 주민 30명 이상이 요구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선택사항이라는 점이다. 또 설명회는 주민만이 참석 가능하지만 공청회는 주재자 및 의견진술가자 있어서 주민 이외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석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청회란 폭넓게 듣는 자리라는 의미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듣는 것인지, 운영주체에 대한 것이다. 평가서 초안이 작성된 이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사업자는 대화하게 되어 있다. 주민은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반영 여부와 대책을 마련한다. 그런데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설명회나 주민의견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요구를 하더라도 사업자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자와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청회를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공청회도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 과연 설명회와 공청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보면 설명회는 사업자가 개최하는 것이며 공청회는 승인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듣는 자리로 설명회와 공청회의 목적 및 위상을 분명히 다르게 하고 있다.

한편 공청회의 기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공청회는 복수의 의견진술자가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현황은 주민 측이 추천한 전문가와 사업자가 추천한 전문

가가 찬반토론회를 하듯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측의 의견을 누가 듣는가 하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사업자 측의 논리와 주민 측의 논리를 사업자가 듣는 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양쪽의 입장을 사업자가 듣는 것이 아니라 협의기관 또는 검토기관, 승인기관이 듣고 인허가나 협의의견 작성에 반영하도록 공청회의 목적을 다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다양한 입장의 주민의견을 주민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듣고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실제 운영상에서는 공청회도 설명회도 사업자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규정되어 있다.

설명회가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 공청회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검토기관의 총괄위원은 참관하여 사업자와 주민 양쪽의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공청회는 사업자가 아닌 레프리가 들어야 한다. 여기서 레프리는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이 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상 승인기관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협의기관이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즉, 사업자 측의 의견과 주민 측의 의견을 듣고서 협의기관의 협의의견 작성에 참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완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사한 제도인 환경영향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 역시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공청회 역시 협의기관이 듣는 것이 좋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청회를 주관해달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2) 개선방향

공청회는 주민 측과 사업자 측의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사업자와 주민(혹은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의 공방을 협의기관, 검토기관 또는 승인기관이 듣는 자리로 개정되어야 한다.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공청회를 환경부가 주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승인기관이 공청회를 주최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두 기관에서 주관하기 어렵다면 사업자가 주관하되 승인기관, 협의기관에서 반드시 참석하게 하는 방안이 차선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나. 공청회 운영방식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공청회는 주민 측이 추천한 의견진술인이 먼저 진술하고 사업자 측 또는 사업자 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형식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의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슈를 나열하고 서로의 주장만 펼치는 비효율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청회 과정에서 서로의 견해차이가 정리, 조정되는 경우도 별로 없다고 한다. 결국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과정이 연속되며, 환경영향이나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내용이 아닌 공청회 운영방식의 문제나 서로의 언행을 문제 삼아 공청회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공청회가 갈등 증폭의 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재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공청회 운영이나 내용의 조정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 간의 언쟁 또는 주민과 사업자의 언쟁으로 주재자가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재자의 진행이 편파적 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은 공청회 녹취록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주재자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주민 측에서 본안 작성 후 추가 설명회를 요구하면, 주재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초안 때만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안단계에서는 반드시 하게 되었으나 본안 때 설명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사업자와 주민이 상호 신뢰하고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안에 대한

설명회를 협의할 수도 있는데 이를 주재자가 무산시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공청회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공청회 운영을 살펴보는 것도 참고가 된다. 1990년대의 일본 도쿄 도의 공청회는 주민 또는 주민이 추천하는 의견진술자가 의견을 진술하기만 하고 종료되었다. 필자가 도쿄 도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니 공청회는 말 그대로 듣는 자리이므로 듣기만 하고 끝난다고 답변하였다. 공청회를 듣는 자리로 이해하였지만 왜 듣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가와사키시의 공청회 조례는 매우 특색이 있다. 의견진술인과 사업자가 서로 2~3번씩 의견을 반복하게 하여 서로의 견해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승인기관인 가와사키 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은 공청회에서의 각각의 주장에 대하여 가와사키 시가 입장을 표명한다는 점이다. 사업자와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승인기관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가와사키 시의 공청회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가와사키 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규정

- 목적
 - 승인기관인 가와사키 시장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
- 공술방식(3round 방식)
 - 1차 공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개요 설명
공술인이 의견 제시
 - 2차 공술: 사업자는 1차 공술에 대한 견해 제시
공술인은 사업자의 2차 공술에 대한 의견 제시
 - 3차 공술: 사업자는 공술인의 2차 공술에 대한 견해 제시
공술인은 사업자에 견해에 대한 총괄 의견 제시
- 방청인의 준수사항: 박수, 전단지 유포, 방해 등을 하지 말 것

〈참고〉 가와사키 시 도시계획 공청회 규정

- 시장의 견해
 - 공청회 발언 및 공술의견에 대한 시의 견해를 작성하여 공술인에게 통지한다.

2) 개선방향

공청회 운영방식에 대한 운영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주민 측의 진술과 사업자의 진술이 이슈별로 최소한 2차례 이상 반복되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지도록 한다.

둘째, 공청회에서 주민 측 및 사업자 측 각각의 주장에 대한 협의기관(또는 검토 기관이나 승인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공청회는 레프리카 들어야 하며 레프리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셋째, 공청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과 다루지 못하는 내용, 지켜야 할 내용과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사전합의를 공청회 참석자에게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공청회가 본질과 다른 문제로 파행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여야 한다.

다. 설명회의 답변자

1) 현황 및 문제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는 주민의 질문에 대하여 평가대행업체에서 답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 환경공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전문가 집단인 평가대행업체에서 답변하는 것이 당연할 수 도 있다.

그런데 대안의 검토 등 사업 예산과 관련 된 부분은 평가대행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평가대행업체에서는 예산의 증가가 수반되는 계획대안의 검토, 보상, 이주대책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 주민의 요청에 따라 계획대안이나 입지대안을 검토한다고 약속할 수 있는 주체가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부장, 과장급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원이 참석하더라도 계획변경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설명회에서 주민의 요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사업자나 평가대행자는 사업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자 측에서 바라본 설명회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설득이 아닌 협의를 위해서는 예산변경 사업변경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설명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업자 측에서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직급의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로 사장이나 오너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가 설명회에 직접 나와서 답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2) 개선방향

설명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직접 주민 앞에서 답변하여야 한다. 그래야 일방적인 설득이 아닌 주민과 협의할 수 있고, 주민도 설명회에 임하는 사업자의 자세를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설명회의 설명 및 답변은 사업자가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답변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설명회에는 사업자 측의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명회 정보의 난이도

1) 현황 및 문제점

사업자 입장에서 설명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참여의 목적 중의 하나인 좋은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역환경정보를 수집하여 평가서 본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

한편 주민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나 평가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설명회에서 “이미 평가서가 환경부에 접수되었는데 이제와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어떡하느냐”라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었다. 초안과 본안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해결될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일반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탓할 수는 없다. 설명회 시작 전에 간단한 평가제도의 소개가 있었다면 설명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는 높아졌을 것이다.

그것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서에 대해서 주민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주민은 물론이고 환경단체 관계자도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인 우려를 정확한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고도 한다(주, 인터뷰결과).

특히 평가서의 내용 중에서 생활환경과 관련한 수치나 기준이 가지는 의미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다고 한다. 기준치를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예를 들어 소음의 3웨클의 차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민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2) 개선방향

주민이나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평가서의 이해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민이 평가서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고 설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평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면 지역에 개발사업이 계획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 공람되고 설명회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도록 환경부나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주민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주민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설명회에서 평가서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거나 주민 입장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면 좋은지에 대해 조언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설명회 등 주민참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코디네이터, 환경영향평가 해설사 등의 지원자가 주민의 언어와 전문가의 언어를 통역해주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일이다.

마.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무산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주민 등의 방해로 인하여 설명회나 공청회가 무산되면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무사히 마치면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더는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설명회나 공청회가 무산되면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기도 하기에 주민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설명회, 공청회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는 사업자도 있다고 한다.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방해로 무산되면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주민방해로 무산되는 것은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 공청회의 운영이 어렵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시에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도 시행령에서도 불가피하면, 설명회나 공청회는 생략한 것으로 인정하나, 그에 준하는 의견수렴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택이 없는 실정이다.

2) 개선방향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무산되었을 경우 법에서 규정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과 시행령에서 말하는 것은 의견수렴의 중지나 생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아닌 다른 방법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화상 공청회의 실시; TV나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TV 토론회나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와 같이 의견진술인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실시한다면 주민 등의 방해로 인하여 공청회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찬반 토론이 충분히 진행된 후에 시청자로부터 전화 메일 등의 온라인으로 추가의견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공청회 주관기관의 변경; 사업자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대한 불신, 또는 불만으로 공청회가 무산되면 협의기관이나 승인기관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협의기관보다도 승인기관이 주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신뢰관계의 유지이다.

셋째, 사회조사 방법론 활용; 화상공청회나 승인기관 주관의 공청회도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이해관계자를 찾아가서 의견을 듣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주민대표자 간담회, 포커스그룹 인터뷰나 참여관찰방법, 설문조사 등의 사회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도 필요하다.

바. 전략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⁴⁰⁾ 전략환

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도로 도입되었다는 주장과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청회에서의 진술 내용을 비교해보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공청회에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게 되어있고, 환경영향평가의 공청회에서는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공청회의 의견진술 범위는 명확히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두 제도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면 당연히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을 생략하면 안 되며, 두 제도가 유사하다면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25조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기에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한 계획이면서 주민 민원이나 주민 의견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면 본 규정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반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민 민원이나 주민 의견이 많고 침해한 대립이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하면 안 될 것이다. 결국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선방향

기본적으로는 목적과 대상이 다른 두 제도의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그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살린다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생략의 조건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이 없거나 공청회를 요구하지 않은 사례, 또는 협의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주민민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 등 구체적인 조건제시가 필요하다.

제4장 결 론

본 과제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의 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도의 분석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주민 참여부분, 설명회부분, 공청회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공청회 부분에서는 일본 가와사키 시의 공청회 관련 조례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운영현황의 분석으로는 이미 시행된 설명회와 공청회의 녹취록과 평가서를 분석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청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공청회를 사업자가 주관하니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결국 사업자의 판단대로 처리된다는 점, 공청회 진행이 쌍방향적인 토의보다는 각각의 진술과 답변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사업자가 아닌 협의기관(또는 승인기관)이 사업자와 주민 등의 견해 차이를 듣는 자리로서 자리매김할 것(즉 협의기관이 또는 승인기관이 주관할 것), 그리고 공청회 진행을 사업자와 주민의 토의를 반복적으로 진행시키는 운영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설명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설명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가 답변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설명회의 내용이 어려워 주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설명회 운영 관련 개선방향으로는 설명회에는 사업자 내부의 책임 있는 자가 답변에 나설 것, 환경영향평가 해설사 또는 환경영향평가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주민참여 절차 생략에 대한 이슈가 제시되었다. 절차생략과 관련한 운영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주민의 반대 등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도록 한 13조 관련사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때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25조 관련 사항이 타당한지 여부가 지적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먼저 13조와 관련하여서는 설명회 공청회가 무산되면, 화상 회의를 개최하거나 승인기관 주최의 의견수렴회를 개최하는 등의 대체수법을 마련할 것을, 25조와 관련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시의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로서 설명회 및 공청회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후속과제로서 상세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환경영향평가법(법률제13040호). 201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0호). 2014.
- 00비축기지 지하화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2015.
- 00국가산업단지 공장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15.
- 00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 환경영향평가서. 2014.
- 00국가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증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2013.
- 00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13.
- 00친수구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13.
- 00선 00~00구간 복선전철 환경영향평가서. 2013.
- 00항 이용고도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14.
- 川崎市. 2013. 「公聴会に関する事務取扱要綱」.
- . 2014. 「川崎市都市計画公聴会運営要領」.

Abstract

Operational Statu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public hearing and to conclude its improvement measures.

With regards to the system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e research has categorized the EIA law,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regulations into three parts: public participation, public briefing and public hearing. For the public hearing part, it refers to the ordinance of the public hearing in the city of Kawasaki in Japan.

With regards to the operational status, it utilizes the record and the evaluation reports of the public hearing and briefing sessions and deducts its problem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 which have been deducted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As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the public briefing, two points has been brought. First,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he opinion of the residents through the public briefing. Second, it is hard for the residents to understand the briefings due to its technicality.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actions such as to make the EIA commentator or EIA consultation office, and to have th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make feedback to the queries of the residents should be taken.

Concerning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the public hearing, two points were criticized. First,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and experts are considerably ignored as of now since the public hearings are set up by th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Second, the public hearings are carried out only with the one-time queries not with the enough interactions between the stakeholders.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should be run by the authorizing institution or the consultative institution rather than by the business operator. In addition, for its operation, consistent discussions between the operator and the residents are suggested for reinforcement of its clarity of the issue.

Finally, the issues of the reduction of the process of public participation have been criticized. Especially, the validity of the decree No.13, which allows to drop the public hearing and briefing process when the objection of the residents occur, and the decree No.25, which permits the public participation of the EIA when the public hearings during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was implemented, have been questioned. For its improvement, the paper suggests two points. Concerning the decree No.13, alternatives such as a video conference or public hearing session organized by the authorizing institution, should be provided when it is dropped. As to the decree No.25, the measure which enables to collect the public opinions except the overlapped one from the both SEA and EIA process should be devised,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and the EIA are differed.

The research is a foundation research which shows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ublic briefing and hearing. More in-depth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in the follow-up research.

Keywords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ublic Participation, Public Briefing, Public Hearing

연구진 약력

조공장

일본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공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현)

E-mail : kjcho@kei.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201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ODA사업의 환경평가 관리방안 연구」 (20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용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현)

E-mail : yjjoo@kei.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충청남도 환경용량평가 연구」 (2014, 충청남도)

「개발사업 입지 및 환경기준 종합분석에 관한 연구」 (20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KEI Working Paper 목록 | 2013~2015

- 2015년**
- 2015-01 싱크홀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김윤승)
 - 2015-02 이슈스캐닝(Horizon Scanning)기법 활용을 통한 물환경관리 부문 이머징 이슈 발굴 연구(한혜진)
 - 2015-03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비교분석 및 국내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황인창)
 - 2015-04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환경 근로자의 작업역량 저하 추정과 공간적 군집 파악 (김동현)
 - 2015-05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공청회 운영현황 분석(조공장)
 - 2015-06 도로 및 철도 사업의 토양분야 환경영향평가 사례 연구(신경희)
 - 2015-07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보건서비스에 관한 기초연구(간순영, 윤성지)
 - 2015-08 자원순환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임혜숙)
 - 2015-09 내륙습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I - 환경부 전국내륙습지 조사 지침(2011)의 적용을 중심으로(방상원)
 - 2015-10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이소라)
 - 2015-11 환경소음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박영민)
 - 2015-12 인과지도(Causal Loop)를 활용, 미래 물수급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류재나)
 - 2015-13 생물안전 법제 기초연구(홍현정)
 - 2015-1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운영현황 및 효율화 방안(선효성)
 - 2015-15 개발사업의 비점오염 영향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이진희)
 - 2015-16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 개선방안(이상범)
 - 2015-17 환경가치 중장기 연구수요 조사(곽소윤)
 - 2015-18 세종특별자치시의 대기질 관리 기획 연구(심창섭)
 - 2015-19 2015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곽소윤)
- 2014년**
- 2014-01 국내 지하수의 자원·환경적 가치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현윤정)
 - 2014-02 층간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기초연구(박영민)
 - 2014-03 소음원 종류에 따른 3차원 소음예측모델 적용방안 마련(선효성)
 - 2014-04 개발사업 입지 및 계획기준의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주용준)
 - 2014-05 기후변화 취약 근로 직종 파악을 위한 기초 연구(김동현)
 - 2014-06 불확실성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안전율 산정 기초연구(정선희)
 - 2014-07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 연구(김태현)
 - 2014-08 기후변화를 반영한 내수침수 리스크 평가 방법론 고찰(류재나)
 - 2014-09 SEA 사후관리를 위한 해외 사례연구(조한나)

2014-10 농어촌 관련 정책 및 계획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고려 방안(임영신)

2014-11 소음·진동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연구(선효성)

2014-12 2014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이미숙)

2013년 2013-01 토양자원 유실 최소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사례 연구(신경희)

2013-02 PM-2.5 환경영향평가 방안 연구(이영수)

2013-03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활용 방안(정휘철)

2013-04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지역 지질재해 리스크 체계 마련(이명진)

2013-05 비전통가스 개발의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조한나)

2013-06 모니터링을 통한 친환경 계획기법의 적절성 검증 기초연구 - 도시공간에서의
stepping stone을 중심으로(최희선)

2013-07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임영신)

2013-08 KEI 환경정보체계 발전방안(전성우)

2013-09 도시하천 유역의 환경평가 방법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홍현정)

2013-10 제조업 환경비용의 국제비교(조일현)

2013-11 바이오가스의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조지혜)

2013-12 자연경관심의제도의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주용준)

2013-13 중간소음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박영민)

2013-14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산업구조 변화 분석(이미숙)

2013-15 KEI 중국환경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추장민)

2013-16 기후변화 적응관련 취약계층 지원대책 현황조사 및 분석 연구(신지영)

2013-17 한국 ODA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현황과 해외사례 비교 연구 - 사업 종료
후 모니터링 사례를 중심으로(김태형)

2013-18 국내 전략환경평가의 사회·경제성 부문 기능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이상윤)

2013-19 환경영향평가시의 시설별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주현수)

2013-20 지형장애물 분석을 통한 환경현황자료 작성방안(김지영)

2013-21 상수원보호구역 상·하류의 수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 잠실상수원 보호구역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구간 중심으로(김태윤)

2013-22 2013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이미숙)

※ KEI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보고서 원문은 KEI 홈페이지(www.k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EI Working Paper 2015-05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 공청회 운영 현황 분석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 · 인프라동)
Tel 044.415.7777 Fax 044.415.7799
<http://www.kei.re.kr>

